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보육 제공 의무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53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장애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보육 제공 의무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7.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2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장애영유아에 대한 가정방문보육 제공 의무

개정안은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해당 장애영유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장애영유아에 대한 국가 보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보육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22조(보육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해당 장애영유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6호의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유치원</u> 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	③ ----- ----- ----- ----- <u>유치원, 제2항에 따른 가정방문보육</u> -----

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
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
애평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지급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가정방문보육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
여야 한다.

⑥ 제4항-----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참여를 돕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의 조기발견 및 의료비지원·보육지원·가족지원 및 그 밖에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복지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¹⁾

또한, 현행법은 장애아동의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제22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제32조).²⁾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생략)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 5. (생략)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인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마련된 경우,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해당 장애영유아의 신청이 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방문보육 실시 및 가정방문보육교사 배치 의무를 부여하고, 양육수당 지급 의무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는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로 인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일정 자격을 가진 가정방문보육교사를 통한 가정방문보육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애영유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4조에서 교육기회 부여에 있어 차별금지를, 제5조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³⁾

다만, 장애영유아가 적절한 돌봄과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⁴⁾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 12. (생략)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육(3-5세)으로 명시하고, 제18조는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특수학
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19조제2항에서 어린이집 재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현재 12세 이하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 및 보육 기관 현황을 살펴
보면, 장애아 특수교육 기관 이용자는 60,773명(기관 수 11,427개소,
'23. 4. 1. 기준)이고, 장애아 보육기관 이용자는 13,606명(기관 수 2,364
개소, '23. 12. 31. 기준) 수준임.

【특수교육 기관 수 및 이용자 수】

(‘23. 4. 1. 기준, 개소, 명)

구분	계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유치원 과정*	초등 과정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통합)	특수 학급	일반 학급 (통합)	
기관 수	11,427	167	177	1,195	1,407	4,856	3,625	197
이용자 수	60,773	1,069	9,876	5,676	2,149	33,121	8,588	294

자료: 교육부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및 보육 기관 및 이용자 수】

(‘23. 12. 31. 기준, 개소, 명)

구분	소계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지정시설)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기관 수	2,364	173	1,464	727
이용자 수	13,606	5,997	6,678	931

자료: 교육부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
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
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 배치⁵⁾를 통한 “가정방문보육”으로도 장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개정안의 “가정방문보육”과 관련하여, 타법에 따른 현행 장애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12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놀이활동, 외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현황】

(’23. 12. 31. 기준,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용자	3,711	3,907	4,071	4,290	4,988
돌보미	2,452	2,608	2,979	3,388	4,394

자료: 보건복지부

5) 교육부는 특수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현재도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유치원과정)*가 부족한 현실**로, 가정방문보육 보육교사 수급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배치기준: (시행령 제6조)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특수교사(유치원과정)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유치원과정)여야 함

** (장애전문어린이집) 283명, (장애통합어린이집) 386명 부족(’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23. 12. 31. 기준,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용자	시간제1)	66,783	56,525	57,454	61,138	66,515
	종일제2)	3,702	3,138	2,617	2,760	1,890
아이돌봄미		24,677	24,469	25,917	26,675	28,071

주1: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최대 960시간 제공(장애아동 포함 전체 이용자 수)

주2: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제공(장애아동 포함 전체 이용자 수)

자료: 여성가족부

아울러, 현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27.)된 만큼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평등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이란 큰 틀 안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⁶⁾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의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재정지원 규정의 의무화는 국가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제 기술적 원칙이고, 현행법상 양육수당 지급의무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6)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평등성 보장을 위해, 영유아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의 기관 설치·운영기준 등 유보통합 추진 중임(법·제도, 교사 자격·양성, 교직원 배치, 프로그램, 재정지원, 전달체계 등).

* 영유아 특수교육기관 : 유치원(특수학급), 특수학교(유치원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 장애아전문(12명 이상, 정원 60% 이상), 장애아통합(3명 이상, 정원 20% 이내, 통합반 운영)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24 ~ 35개월	100천원	24 ~ 35개월	156천원	24 ~ 35개월	200천원
36 ~ 85개월	100천원	36 ~ 47개월	129천원	36 ~ 85개월	100천원
		48 ~ 85개월	100천원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장애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평등성 보장을 위해, 영유아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의 기관 설치·운영기준 등 유보통합을 추진 중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전제로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가정방문 보육을 의무 제공토록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또한, 양육수당은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상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강행규정과 같이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되고 있는바, 개별법에서 강행규정으로의 법률 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단체 의견은 다음과 같음.

【관계 기관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현행 장애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아이돌봄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와 중복되며,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평등성 보장을 위해 영유아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의 기관 설치·운영기준 등 유보통합 추진 중
- 양육수당은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상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 상 강행규정과 같이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되고 있는바, 개별법에서 강행규정으로의 법률 개정은 실효성이 낮음

【여성가족부】: 신중검토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일대일로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돌봄서비스로, 개정(안)의 '가정방문보육'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신중검토 필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신중검토

- 가정방문보육을 어린이집에서 전담하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기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192